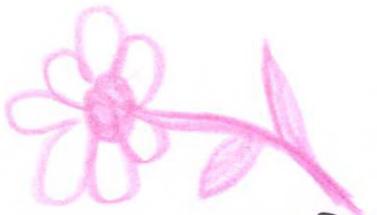


병원 심리



의료급여법 개정이 필요한 조항들 X

1. 수급권자의 범위 관련

-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명시

제3조 (수급권자) ①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5.15, 2004.3.5, 2006.12.28, 2007.8.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
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과 수급권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은 ①항9호 이하에 차상위계층을 정의하는 표현을 넣어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예시) 9.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10. 제9호외의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1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의 18세 미만의 아동

- 그러나 현재 법 체계상 수급권자가 특정 법률로 정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여서 이와 같은 개정안 성안이 가능할지 의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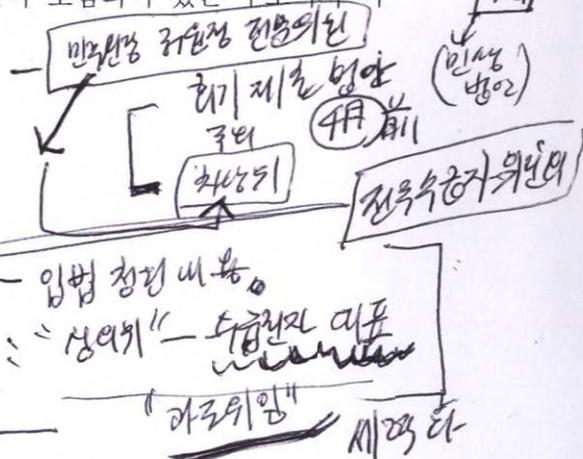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관련

- 의결권 부여, 시민사회 참여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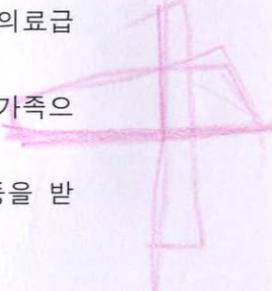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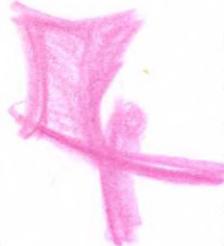
사법권도 넣어야 할 것

입법청원

헌법 제11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제6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2.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자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3. 의료급여의 내용 관련

- 현실적으로 개정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지……(건강보험 요양급여 조항과 같은 조항이라)

제7조 (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③항을 삭제할 수 있을지……(비급여대상을 규정하는 조항 삭제)

4. 의료급여 전달 체계 관련

- 1차, 2차, 3차로 되어 있는 것을 두 단계로 전환

일반 병원에서 해야

건강보험이 내야
건강보험 1·2·3차

제9조 (의료급여기관) ①의료급여는 다음 각호의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4.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동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②의료급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1. 제1차의료급여기관
 - 가. 「의료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 나.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라.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동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2. 제2차의료급여기관 :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3. 제3차의료급여기관 : 제2차의료급여기관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6개월
보통
1·2차
3차
10%
누계
1

5. 본인부담 관련

- 본인 부담 관련 규정 삭제

제10조 (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06.12.28>

⇒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전부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

6. 건강검진 관련

- ~~수급자 건강검진 의무화~~

제14조 (건강검진)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대상·회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행하여야 한다.

7. 장제비 등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임의급여를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적용

- 법 조항 신설

~~환자~~ 환자 2~9항

법12조의 1(임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의해 실시되는 임의급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도 동일하게 급여를 실시한다.